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33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입법 배경 및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6
2. 주요 내용별 검토	8
가. 법률안 제명	8
나. 현충시설 정의 규정(안 제2조)	11
다.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안 제3조)	16
라.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18
마. 현충시설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20
바. 현충시설 지정 규정(안 제9조)	22
사. 현충시설의 지정해제(안 제11조)	26
아. 관리자의 지정(안 제12조)	30
자.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안 제18조)	33
차. 예산의 지원(안 제20조)	37
※ 참고자료	39

I. 제안경위

1. 제출자 : 이정문의원 등 15인
2. 제출일 : 2025. 2. 13.
3. 회부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관리·건립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어 현충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현충시설의 건립과 현충시설 또는 현충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현충시설 건립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현충시설 및 현충유적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마. 현충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22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충시설’을 확대·개편하고, 현충시설의 지정 및 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신설하여 현충시설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며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령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단 3개의 조항으로 지정부터 관리 및 지원까지 현충시설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 및 보훈부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현충시설(공훈선양시설) 관련 법령 현황>

법령명	관련 규정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현충시설의 범위,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의 해제, 관리, 건립지원, 실태조사 등(16개 조항)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7개 조항)
현충시설 관리지침(훈령)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정·해제의 고시 및 통지,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현충시설의 관리·활용계획 등(29개 조항)

□ 현충시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사적지 등으로,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며,¹⁾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념사업회 등에서 관리하고 있음.²⁾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2) 참고자료 1 현충시설 현황 참조(28쪽)

<관리주체별 현충시설 현황>

(2025. 2. 28. 현재)

구 분		현충시설							
		계	기념관	동상	탑·비석	사당	생가	조형물	기타*
계		2,331	108	169	1,706	58	47	56	187
관 리 주 체	지자체	1,064	46	63	810	22	22	18	83
	군부대	144	3	20	104	1	-	9	7
	사업회	459	34	28	354	9	5	14	15
	학교	149	5	30	94	-	-	7	13
	문중대표	135	2	3	103	11	10	-	6
	기타*	380	18	25	241	15	10	8	63

※ 기타 ① 관리주체별 : 공공기관, 마을자치단체, 개인 등

② 현충시설별 : 공원, 터, 사찰 등

자료 : 국가보훈부

○ 그러나, 현충시설의 급격한 증가 추세³⁾에 비해 관리 소홀과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에 대한 실질적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충시설 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외 독립운동관련 시설 등의 훼손·소멸 등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제정안은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

3) 2003년도 811건에서 2025년도 2월 기준 2,331건으로 증가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려는 것으로, 국내·외에 산재한 현충시설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총 23개 조문의 본칙과 3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구성 체계>

구 분	조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현충시설의 지정
제10조	현충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
제11조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제12조	관리자의 지정
제13조	현충시설의 관리

구 분	조 제 목
제14조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제15조	현충시설 활성화
제16조	안내해설사 양성
제17조	현충시설의 건립
제18조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
제19조	현충시설 정보화의 촉진
제20조	예산의 지원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법률안 제명

□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국가보훈 기본법」은 ‘공훈선양시설’이라는 용어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은 ‘현충시설’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음.

○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은 2002년 법 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⁴⁾ ①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②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한정하여 민주화운동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⁵⁾ 반면,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훈선양시설’은 ①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의 수호, ③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및 ④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여 그 정의상 공훈선양시설에 민주화 운동시설을 포함하고 있음.⁶⁾

4) ‘제8장의2 현충시설’을 신설하고,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총리령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2003년 국가보훈처훈령 「현충시설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갖추.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 제정안은 부칙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법」 제8장의2 현충시설을 삭제하고,⁷⁾ ‘현충시설’을 현행 현충시설(① 독립운동시설, ② 국가수호시설)에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을 추가(③ 민주화운동시설)하여 정의하고 있음.

○ 제정안의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민주화운동 및 공무수행 시설을 포함하는 공훈선양시설의 의미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해됨.

□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보훈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제정안은 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 및 용어에서 체계적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함. 제정안의 ‘현충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의 공훈선양시설과 대동소이한 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법률 용어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3. (생략)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략)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 5. (생략)

7) 안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2(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지난 제20대국회 법안 심사⁸⁾ 시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과 관련하여 ‘현충’의 개념에 민주화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민주화운동 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법 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주화 운동시설을 현충시설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⁹⁾ 이러한 20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명칭을 ‘보훈기념시설’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안 심사 시 독립·호국·민주 관련 시설을 하나로 묶을 경우 오히려 개별 시설 각각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 운동시설, 민주화운동시설 등 개별 시설의 의미가 드러나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¹⁰⁾

8) 제364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2018. 11. 23.)

9) 제20대국회 제364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8.11.23.)

10) 제21대국회 제391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11.17.)

나. 현충시설 정의 규정(안 제2조)

- 제정안 제2조는 동 법에서 사용하는 현충시설, 독립운동시설, 국가수호시설, 민주화운동시설, 기타 현충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과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선양하기 위한 시설과 장소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등을 말한다.

2. “독립운동시설”이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공원·기념비·추모비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생가(生家) 및 그 부속 건물

다. 독립운동을 한 장소

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등

3. “국가수호시설”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국가수호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수호유공자”라 한다)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엔참전용사(이하 “유엔참전용사”라 한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

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국가수호유공자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공원·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국가수호유공자의 사당·생가 및 부속 건물

다.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수호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거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등

4. “민주화운동시설”이란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이하 “민주화운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사실 또는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공원·기념비·추모비와 그 밖의 비석과 탑

나. 민주유공자의 사당·생가 및 그 부속 건물

다. 민주화운동등을 한 장소

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민주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등

5. “기타 현충시설”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이하 “기타 국가유공자”라 한다)의 희생과 공훈 및 그들과 관련된 사실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을 말한다.

6. “현충유적지”란 현충시설 중 역사적·교육적으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등으로서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등을 말한다.

7. “관리자”란 현충시설을 관리하여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는 사람으로 제1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정안은 ‘현충시설’을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독립운동시설 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독립운동시설 등의 정의 >

구 분	내 용
독립운동시설	독립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설
국가수호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국가수호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7호, 제9~10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설
민주화운동시설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리거나 관련 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시설
기타 현충시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 제14~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 및 그들과 관련된 사실을 기리는 시설

□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을 살펴보면, ‘희생공헌자’는
①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③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④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 순서로 4개로 분류하고 있음.¹¹⁾¹²⁾ 이는 역사적 순서, 국가적·

1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의 순서로 이해되며,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는 공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됨.

안 제2조제1호의 ‘헌충시설’ 정의규정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민주주의 발전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보훈 기본법」에 규정한 순서로 변경하고,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과 같이 공무수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12)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한편, 안 제2조제3호 “국가수호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국가수호에 관한 사실을 기리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국가 수호’는 일정 부분 관련이 있기는 하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국가 수호’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공무수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두 용어의 구분 >

항목	국가수호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핵심의미	국가의 존립과 주권, 안보체계 유지를 위한 행위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
대표영역	군인, 경찰, 정보기관 등 대외적 국가체계 방어	소방, 경찰, 공무수행자 등 생활안전, 사회질서 수호
위협대상	외침, 테러, 침략 등	재난, 화재, 범죄 등
법적맥락	주로 군사적, 전략적 의미	생활안전 및 치안의 영역

다.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안 제3조)

- ☐ 제정안 제3조는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 ①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색 2.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과 상징성 3.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 ② 현충시설은 그 원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보존·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 ☐ 제정안은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항제1호 ‘지역적 특색’, 제2호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과 상징성’, 제3호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현충시설 건립비용 지원 시 ①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②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13)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 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 제1호의 ‘지역적 특색’이 제2호의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과 상징성’ 및 제3호의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보다 중요한지 또는 각 호의 열거순서에 관하여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3조는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충시설의 지정’도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 외에 안 제9조는 ‘현충시설의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¹⁴⁾ 법체계상 제3조에서는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14) **안 제9조(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蹟地), 또는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이 있었던 일정한 장소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현충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또는 기타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 2. 독립운동, 국가수호활동 또는 민주화운동등과의 관련성
- 3. 시설등의 보존상태
- 4. 시설등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 5. 현충시설 지정 이후 관리계획

④ 그 밖에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 요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제정안 제6조는 현충시설의 건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내용,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건립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충시설 건립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직전 5년간의 현충시설 건립등에 대한 평가
3. 현충시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현충시설의 관리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현충시설의 안내해설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의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현충시설의 건립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정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평가, 재원조달방안, 정보체계 구축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제정안과 같이 현충시설 건립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서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국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 현충시설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는 현충시설의 건립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현충시설심의위원회) ①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3.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한 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5. 현충시설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현충유적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역사, 건축, 조형물, 외교,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현충시설의 조사 및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안 심사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충시설심의위원회는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정책자문 위원회나 보훈부 훈령으로 설치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활용을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¹⁵⁾ 안 제7조, 제8조 및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동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⁶⁾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

바. 현충시설 지정 규정(안 제9조)

- 제정안은 지정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또는 기타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시설 등의 보존상태·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을 독립운동시설, 국가수호시설 및 민주화운동시설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 제9조(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蹟地), 또는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이 있었던 일정한 장소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현충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민주유공자 또는 기타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국가수호활동 또는 민주화운동등과의 관련성
 3. 시설등의 보존상태
 4. 시설등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5. 현충시설 지정 이후 관리계획
- ④ 그 밖에 현충시설의 지정 및 지정 요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는 현충시설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운동·국가수호활동·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담은 것으로 보임.¹⁷⁾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2 제1항은 ‘현충시설’ 용어에 대한 실질적인 정의 규정이며 제3항은 현충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규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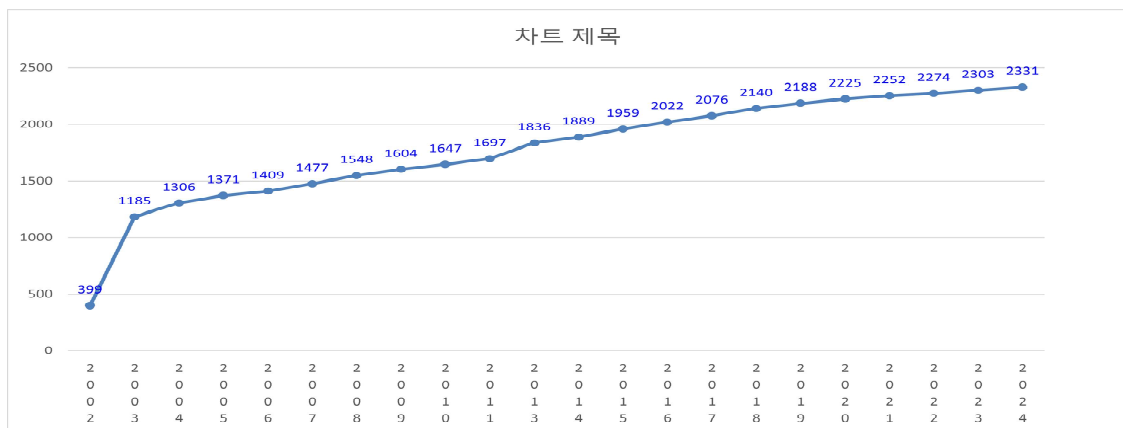
○ 제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지정

17)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는 해제된 현충시설은 제정안에 의하여 지정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⁸⁾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현충시설은 제정안 부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됨.

-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제정안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시설은 총 72개소임.¹⁹⁾
- 2024년 12월말 현재 지정된 현충시설은 2,331개소이고, 현충시설의 지정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현충시설 지정 추이>



자료 : 국가보훈부

- ☐ 제정안은 현충시설의 지정을 원하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18) 안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해제된 현충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9) 4·19혁명 : 31개소, 5·18민주화운동 : 41개소

부재함.

-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2도 제정안과 같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근거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이 국가보훈부장관의 현충시설 직권지정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²⁰⁾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직권지정한 사례는 없으나, 소유자 불명, 관리의 긴급성 등 부득이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 직권으로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²¹⁾

20)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이하 “임시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

사. 현충시설의 지정해제(안 제11조)

□ 제정안 제11조는 서훈 취소, 보훈관계법 적용 배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시설²²⁾ 등은 현충시설에서 해제하고 3개월 이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서훈 취소, 보훈관계법 적용 배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된 시설, 동일 목적으로 새로 건립하거나 동일 지역의 유사한 현충시설을 통합하여 새로 지정된 현충시설의 부대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려는 시설 등은 현충시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1조(현충시설의 지정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과 관련한 시설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한 시설등 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

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 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2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보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사람과 관련한 시설등

4.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시설등으로서 원형 복원이 곤란한 시설등

5. 동일 목적으로 새로 건립하거나 동일 지역의 유사한 현충시설을 통합하여 새로 지정된 현충시설의 부대시설로 지정하고자 하려는 시설등

6. 그 밖에 현충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해제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현충시설(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관할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 현충시설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정의 해제를 건의하고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²³⁾ 최근 5년간 총 31건의 시설이 지정해제 되었음.

23)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9조(현충시설지정의 해제) ① 보훈(지)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로서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영 제7조에 따른 현충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망 등으로 의견 첨부 불가능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보훈문화정책관은 보훈(지)청장의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건의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현충시설 지정해제 현황>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정 해제	9건 (독립 6, 국가수호 3)	6건 (독립 2, 국가수호 4)	8건 (독립 6, 국가수호 2)	7건 (독립 1, 국가수호 6)	1건 (국가수호 1)

* 사례) 시설의 이전 또는 통폐합하는 경우, 시설의 재건립 추진 등
자료 : 국가보훈부

□ 제정안은 현충시설 지정 해제 사유에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한 사람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현충시설의 지정에 의한 지정 현충시설의 소유자로서 지정에 따르는 여러 제약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등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의 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제1항제3호는 지정해제 대상 중 하나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과 관련한 시설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독립유공자에서 제외되며,²⁴⁾ 관련 현충시설도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친일반민족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6.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행위와 관련된 별도 지정해제 규정은 중복 조항인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11조제3항은 현충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현충시설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충시설의 지정 해제 외에 철거까지 강제하는 것은 생가·기념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 관리자의 지정(안 제12조)

- 제정안 제12조는 현충시설 지정 시 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자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2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자의 성실 관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²⁵⁾ 안 제12조는 동 규정을 담은 것으로 이해됨.

- 시행령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정을 요청한 자(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관리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정요청자가 관리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25)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정요청자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²⁶⁾ 관리자의 업무를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홍보,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현충시설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⁷⁾

- 명문의 근거규정은 없으나,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지정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함.²⁸⁾

- 제정안은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관리자를 누구로 지정할지와 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리자를 누구로 지정하는지와 관리자의 업무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26)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관리자의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27)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관리자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정요청 하도록 함.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자.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안 제18조)

- 제정안 제18조는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8조(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보존·관리) ①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국외에 있는 현충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현충시설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조사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외국정부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국외에 있는 현충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국외에 있는 현충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 현충시설을 조사하고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외 현충시설은 특히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독립유공자 등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 보훈정신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장소적 제약으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국가유공자법」의 하위법령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외 현충시설 관리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현충시설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외교부장관이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⁹⁾ 이러한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는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보수하려는 국외 민간단체 및 외국기관 등(국외사업주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음.

- 다만,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나 참전시설은 현재 현충

29)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 등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의 현충시설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로 지정된 것이 없음.³⁰⁾

□ 안 제18조제1항은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거나 국외에 있는 현충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 이해됨.

○ 먼저, 현재 현존하는 국외 현충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시설 대부분이 해당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외교적 환경여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직접적 시설관리 및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고,³¹⁾ 국외 현충시설 대부분은 현지 국가 및 지방정부, 단체 등의 소유이며, 국외 현충시설은 국가별로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재외공관의 전담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대부분이 해당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외교적 환경여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직접적 시설관리 및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 현충시설을 재외동포 등 민간인이 건립하는 경우를 살펴 봄.

‘현충시설 지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데,

30)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

31)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2019, 전제서

이는 외국에 소재하는 국외 현충시설에 대하여 행사될 수 없는 것임.³²⁾ 현충시설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충시설의 건립등에 사업 계획서 제출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충시설을 건립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려는 민간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

차. 예산의 지원(안 제20조)

- ☐ 제정안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0조(예산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충시설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 다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충시설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에 따른 현충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그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에 드는 비용

-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충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제정안 제20조제1항단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³³⁾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충시설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현충시설을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현충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유인이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국가유산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 시 현충시설의 보존·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³⁵⁾

문 의 처
02)6788-5110

- 3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 3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35)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7조(예산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라 각 호를 고려하여 총액사업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동일 목적의 사업을 다른 중앙관서사업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한다.개·보수.

참고1

국내·외 현충시설 등 현황('24.12월말 기준)

□ 국내 현충시설 지정현황

○ 시설 종류별 현황

('25. 2. 28. 현재)

구분	계	비석	탑	동상	조형물	기념관	사당	생가	공원	장소 등
계	2,331	1,168	538	169	56	108	57	47	24	164
독립운동	998	478	106	98	11	79	48	47	6	125
국가수호	1,333	690	432	71	45	29	9	0	18	39

○ 소유자별 현황

('25. 2. 28. 현재)

구분	계	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 등학교		대학교		기념 사업회	문 중	마 을 자 치 단 체	개 인	기 타
		국 방 부	경 찰	기 타		국 가	지 방	국· 공 립	사 립	국· 공 립	사 립					
계	2,331	133	71	22	1,203	5	13	83	40	6	5	380	130	37	80	123
독립 운동	998	3	3	10	508	1	6	29	21	3	3	117	129	8	73	84
국가 수호	1,333	130	68	12	695	4	7	54	19	3	2	263	1	29	7	39

□ 국외 독립운동 관련 시설

('25. 2. 28. 현재)

계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	카자 흐스탄	쿠바	유럽	기타
1,032	483	159	123	69	53	25	13	34	73

□ 국외 참전시설 등 현황

○ 시설 현황 : 25개국(전투 16, 의료지원 6, 기타 3)

('25. 2. 28. 현재)

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기타
393	278	23	10	7	8	9	5	53

참고2

4·19혁명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설 현황

□ 총 72개소 (4·19혁명 : 31개, 5·18민주화운동 : 41개)

○ 민간소유(14개), 국가소유(11개), 지자체 소유(47개)

(‘25. 3. 31. 기준)

연번	구분	시설명	소재지	관리자(소유자)	소유구분
1	4·19	3·15의거 기념비	경남 창원시	(사)3·15기념사업회	민간
2	4·19	3·15의거 기념탑	경남 창원시	(사)3·15기념사업회	민간
3	4·19	무학초등학교 총격담장	경남 창원시	(사)3·15기념사업회	민간
4	4·19	김주열열사 시신 인양지	경남 창원시	김주열기념사업회	민간
5	4·19	4·19혁명진원지(표지석)	경남 창원시	4·19혁명기념사업회	민간
6	4·19	4·19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부산시 중구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간
7	4·19	춘천민주인사 추모비	강원도 춘천시	춘천민주화동지회	민간
8	4·19	4·19학생의거 기념탑	전북 익산시	익산 마백역사연구회	민간
9	4·19	제주4·19민주혁명 기념탑	제주시 연동	제주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	민간
10	4·19	4·19혁명 민주금자탑	충북 단양군	단양군4·19기념사업회	민간
11	4·19	고려대 4·18기념탑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민간
12	4·19	김주열열사 흉상	경남 창원시	마산상고	국가
13	4·19	김용실, 김영준열사 추념비	경남 창원시	마산고교	국가
14	4·19	강용기열사 추도비	경남 창원시	마산공고	국가
15	4·19	김영호열사 추도비	경남 창원시	마산중앙고	국가
16	4·19	4·19혁명비문	광주시 동구	광주고	국가
17	4·19	광주4·19사적지 기념탑	광주시 동구	광주고	국가
18	4·19	4·19학생의거 기념탑	인천시 남구	인천기계공업고	국가
19	4·19	광주4·19혁명기념관	광주시 동구	광주	지자체
20	4·19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전북 남원시	남원시	지자체
21	4·19	4·19상징 기념탑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지자체
22	4·19	4·19의거희생영령추모비	광주시 남구	광주시	지자체
23	4·19	4·19혁명 사적지 표석	대구시 중구	대구시 중구	지자체
24	4·19	4·19혁명의 진원지 기념비	대전시 동구	대전시 동구	지자체
25	4·19	신정용열사 기념비	부산시 금정구	부산 금정구	지자체
26	4·19	민주탑	충남 금산군	금산군	지자체
27	4·19	충북 4·19혁명 학생기념탑	충북 청주시	청주시	지자체
28	4·19	민주의 선봉(4·19학생기념비)	전북 무주군	무주군	지자체
29	4·19	4·19민주혁명 기념비	전남 목포시	목포시	지자체
30	4·19	충주4·19 학생혁명 기념탑	충북 충주시	충주시	지자체
31	4·19	광주4월혁명발상 기념탑	광주시 동구	광주고	지자체

연번	구분	시설명	소재지	관리자(소유자)	소유 구분
32	5·18	최덕수열사 추모비	전북 정읍시	최덕수열사기념사업회	민간
33	5·18	임군수열사 추모비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민간
34	5·18	5·18민주화운동 표지석	전북 전주시	5·20구속부상자회전북지회	민간
35	5·18	고 이세종투사 추모비	전북 덕진구	전북대학교	국가
36	5·18	5·18민중항쟁사적(강진농고)	전남 강진군	전남생명과학고	국가
37	5·18	안병하 홀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	국가
38	5·18	5·18 김동수열사 기념비	전남 장성군	서삼초	국가
39	5·18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시 북구	광주시	지자체
40	5·18	광주역 광장	광주시 북구	광주시	지자체
41	5·18	(구)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2	5·18	광주 금남로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3	5·18	광주 YMCA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4	5·18	상무관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5	5·18	광주YWCA 오테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6	5·18	광주MBC 오테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7	5·18	녹두서점 오테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8	5·18	전남대학교병원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49	5·18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50	5·18	(구)광주적십자병원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51	5·18	조선대학교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52	5·18	배고픈다리 일대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53	5·18	주남마을 인근 양민학살지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54	5·18	광목간 양민학살지 (진월동,송암동)	광주시 남구	광주시	지자체
55	5·18	농성광장 격전지	광주시 서구	광주시	지자체
56	5·18	상무대 오테	광주시 서구	광주시	지자체
57	5·18	무등경기장 정문	광주시 북구	광주시	지자체
58	5·18	양동시장	광주시 서구	광주시	지자체
59	5·18	광주공원광장(시민군 편성지)	광주시 남구	광주시	지자체
60	5·18	5·18 최초 발포지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61	5·18	광주교도소	광주시 북구	광주시	지자체
62	5·18	국군광주병원	광주시 서구	광주시	지자체
63	5·18	남동성당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64	5·18	505보안부대 오테	광주시 서구	광주시	지자체
65	5·18	들불야학 오테	광주시 서구	광주시	지자체
66	5·18	전일빌딩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67	5·18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68	5·18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69	5·18	5·18정신계승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광주시 북구	광주시	지자체
70	5·18	5·18 자유공원	광주시 서구	광주시	지자체
71	5·18	(구) 금성파출소 무기고	전남 나주시	나주시	지자체
72	5·18	광주도청	광주시 동구	광주시	지자체

□ 국가보훈 기본법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의2 현충시설

▶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장관은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 (총리령)
제1조(목적) 제2조(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의 업무)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제4조(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6조(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제7조(관리자의 지정) 제8조(관리자의 업무) 제9조(명예관리자) 제10조(고시 및 통지) 제11조(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12조(현충시설의 건립지원) 제13조(현충시설의 실태조사) 제14조(국외 현충시설의 관리) 제15조(현충시설 관리단체의 지원)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조(목적) 제2조(관리번호) 제3조(현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등) 제4조(실태조사계획) 제5조(지정요청 및 지정의 서식) 제6조(고시 및 통지의 내용) 제7조(실태조사 공무원의 증표)

□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1조(목적)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구성)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의결) 제6조(수당 등) 제7조(현충시설의 지정 등) 제8조(관계 전문가) 제9조(현충시설지정의 해제) 제10조(지정·해제의 고시 및 통지) 제11조(사업의 주체) 제12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제13조(개·보수대상 시설 선정) 제14조(예산요구) 제15조(예산의 확정 통지)	제16조(사업비 집행) 제17조(정산) 제18조(지원실적보고) 제19조(현충시설 실태조사) 제20조(현충시설의 관리·활용계획) 제21조(자료관리자 지정 등) 제22조(현충시설의 활용) 제23조(사업의 주체) 제24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제25조(예산요구 및 확정통지) 제26조(사업비 집행) 제27조(사업의 변경) 제28조(정산) 제29조(재검토기한)
--	--

